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2

제출일자 : 2014. 10.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권고 등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높이고 군민독서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청각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7조 제3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조문제목도 변경된 내용에 맞게 변경(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9. 5. ~ 9. 2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을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시청각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나친 상업적 목적 또는 정당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1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